

□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반연구 제안요청서(RFP)

제안요청서명 (세부사업명)	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반연구 (의료데이터 보호·활용기술개발)			보안과제 여부 (보안등급)	일반
공모유형	품목지정형			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여부	X
적용대상가점	X	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여부	X	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제출대상 여부	X
과제명	※ '해당연구'와 관련된 최종목표(과제종료 시),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기술				
지원규모 및 기간	지원분야	지원기간	연구비	협약형태	선정 예정 과제수
	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기반 연구	총 3년 이내	총 500백만원 이내 (연간 200백만원 이내)	다년도	2개 이내
	※ 1차년도 연구기간은 6개월 이내, 연구비는 6개월(100백만원) 이내 기준으로 지급				

▶ 지원목적

-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목적의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개선 및 의료 질 향상

▶ 지원분야 및 내용

지원분야	성과목표	지원내용				
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반 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SCI(E)/SSCI 논문 3건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연구내용과 관련성이 적은 논문은 연구과제 평가 시 성과 실적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■ 국내·외 학술등재지 학회발표 2건 이상 ■ 공공목적의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성과물(정책보고서 등) 2건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연구 성과물은 연구자가 제시 	<p>■ 4개 공공기관*에서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익적 목적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기반연구</p> <p>*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질병관리본부, 국립암센터</p> <p>** 본 연구에 사용 될 데이터는 연구자가 각 기관에 개별 신청하여 확보하여야 함</p> <p>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정책연구 (아래 지원내용에서 택일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지원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희귀 질환* 관련 정책지표 개발 및 정책방안 제시 (예) 희귀질환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</td> </tr> <tr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희귀질환 기준 : 유병(有病)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함 (희귀질환판별 제2조) </td> </tr> <tr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외계층 및 의료 취약지역의 건강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 연구 (예) 농(어)촌지역의 건강행태분석과 이를 통한 건강 예방정책모델 개발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희귀 질환* 관련 정책지표 개발 및 정책방안 제시 (예) 희귀질환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희귀질환 기준 : 유병(有病)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함 (희귀질환판별 제2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외계층 및 의료 취약지역의 건강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 연구 (예) 농(어)촌지역의 건강행태분석과 이를 통한 건강 예방정책모델 개발
지원내용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희귀 질환* 관련 정책지표 개발 및 정책방안 제시 (예) 희귀질환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희귀질환 기준 : 유병(有病)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함 (희귀질환판별 제2조) 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외계층 및 의료 취약지역의 건강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 연구 (예) 농(어)촌지역의 건강행태분석과 이를 통한 건강 예방정책모델 개발 						

※ 제시된 연구목표 이외 추가성과를 연구자가 제안 가능

▶ 지원대상

-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연구원 전원의 소속은 '국내 의료기관 및 대학, 국·공립 연구기관'으로 한정함

※ 기업(산업체) 및 부설연구기관 소속된 자는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

-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'신청요건' 부분 참고

▶ 특기사항

- 일반적인 사항은 '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평가지침' 참고

구분	내용
성과물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동 연구개발 성과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소유로 함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과제 신청 시 공공기관 데이터 이용을 위한 데이터 이용 승인서(신청서) 및 기관생명윤리 위원회(IRB) 심의서를 선정 서면평가 전까지 전문기관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. 미제출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탈락될 수 있음. ■ 본 사업 특성상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(AI) 개발 및 활용을 주제로 한 연구는 지원이 불가함 ■ 본 연구는 국내 「의료법」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, 「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」 등 현행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마련이 되어야 함

▶ 선정평가 기준

구분	평가항목(배점)	
	대항목	소항목
서면·구두 평가	1. 연구계획의 우수성(5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(15) ○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 일정의 적절성(10) ○ 연구 배경과 연구내용의 적절성(15) ○ 장애요인 해결방법의 적절성(10)
	2. 연구자 및 연구환경의 우수성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책임자의 전문성과 과제수행능력(10) ○ 연구기관의 연구역량(10)
	3.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의 활용가능성(15) ○ 공공적 파급효과(15)

*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

▶ 담당자 연락처

구분	담당자	연락처
사업내용(RFP) 안내	의료정보R&D팀 김보라 연구원	043-713-8223
평가절차/일정 안내	R&D평가혁신팀 이 진 연구원	043-713-8258